

[신소재공학과] 개신누리 공결 신청 안내

(2023.11.22. 기준)

※ 모든 공결신청은 사전 혹은 사후 7일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※

※ 증빙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※

1. 코로나 관련

1) 확진인 경우

-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(확진 문자 캡처 또는 코로나검사확인서 등) 첨부하여
- 개신누리-공결신청-[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] 선택
- 공결기간은 검사일~격리 마지막 날 23:59까지로 입력 (현재 5일 격리 권장)
ex) 11.20.(월) 확진인 경우 11.20.(월) 00:00 ~ 11.24.(금) 23:59 으로 입력

2) 증상은 있으나 확진은 아닌 경우 → 2. 질병 공결

3) 증상이 없으나 주변인이 확진된 경우

- PCR검사의 경우 검사 당일 3시간 공결 인정
- 공결증빙서류
 - ① 학생 본인 코로나 음성 확인서
 - ② 주변인 확진 문자 캡처 혹은 코로나검사확인서
 - ③-① (가족인경우) 가족관계증명서
 - ③-② (가족이아닌경우)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빙이 되는 서류 등

4)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→ 반려 (공결 불가)

- 자가진단키트 양성인 경우 : 병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확인 → 1.-1) 확진인 경우
- 자가진단키트 음성인 경우 : 해당 없음

2. 질병 공결

- 개신누리-공결신청-[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] 선택
- 병원 진료 후 '진단서' 또는 '진료확인서' 서류 필요
- 신청화면에서 '공결승인신청서'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(본인서명필수), 진료확인서류와 같이 첨부
- 신청 완료 후 **학과사무실로 승인 요청 [043-261-2411]** (학과장님께 개별 요청 금지)

** 병원 진료 시에는 **가급적 공강시간을 최대한 활용** 바라며 부득이한 질병의 경우에만 공결 신청 바랍니다.

ex) 치과, 정형외과, 물리치료, 피부과, 가벼운 감기증상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강시간 활용

3. 병역(입영)신체검사, 예비군 등

- 개신누리-공결신청-[병역법 동원 소집] 선택
- 본인 확인이 가능한 소집통지서, 화면캡처본 등 증빙 서류 첨부

4. 결혼/출산/입양/사망 등

- 개신누리-공결신청-[해당되는 항목] 선택, 해당 기간 입력 (토요일,공휴일은 그 일수에서 제외)
- [결혼], [출산], [입양] 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첨부
- [사망]의 경우 '사망증명서'와 함께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'가족관계증명서' 첨부

5. 기타

-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. [043-261-2411]

공결사유	선택
공결기간	선택
신청일자	총장 승인 공시행사(52조1항1호)
진행상태	교육실습 등(52조1항2호)
반려사유	병역법 동원 소집(52조1항3호)
	천재지변(52조1항4호)
서류	국가가 정한 투표(52조1항5호)
	[결혼]본인(5일)(52조1항6호)
	[결혼]자녀(1일)(52조1항6호)
	[출산]본인(20일)(52조1항6호)
	[출산]배우자(10일)(52조1항6호)
	[입양]본인(20일)(52조1항6호)
	[사망]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(5일)(52조1항6호)
	[사망]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(3일)(52조1항6호)
	[사망]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(3일)(52조1항6호)
	[사망]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1일)(52조1항6호)
	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(52조1항7호)
	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(52조1항8호)
	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(52조1항8호)
	코로나19 백신접종후 이상반응(52조1항8호)
	PCR검사(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)
	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-PCR검사 결과 증빙(검체채취일로부터7일)
	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(부)장이 인정한 경우(52조1항8호)